

# 2013년 지방세지출보고서

(2012년 결산 및 2013년 추계 기준)

자치안전국  
세무과 도세팀

# 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현황 개요

## 1. 비과세·감면 총괄표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	‘12년(결산)	‘13년(추계)	비교증감
비과세·감면액(A)		4,127,596	4,257,239	129,643
	비 과 세	2,445,913	2,564,475	118,562
	감 면	1,681,683	1,692,764	11,081
지방세 징수액(B)		40,889,307	40,252,000	△ 637,307
비과세·감면율(A/A+B)		9.2	9.5	0

## 2. 기능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분 야	2012년		2013년		비교증감	
	결산액	비중	추계액	비중	증감	증감률
총 계	4,127,596	100	4,257,239	100	129,643	3
1 일반공공행정	1,410,340	34.2	1,506,455	35.4	96,115	6
2 공공질서 및 안전	31,445	0.8	31,811	0.7	366	1
3 교육	430,292	10.4	414,950	9.7	△15,342	△ 3
4 문화및관광	189,026	4.6	206,355	4.8	17,329	9
5 환경보호	0	0	0	0	0	0
6 사회복지	557,908	13.5	564,529	13.3	6,621	1
7 보건	36,126	0.9	64,113	1.5	27,987	77
8 농림해양수산	161,039	3.9	138,762	3.3	△22,277	△ 13
9 산업·중소기업	164,825	4.0	162,438	3.8	△ 2,387	△ 1
10 수송 및 교통	94,410	2.3	83,384	2.0	△11,026	△ 11
11 국토 및 지역개발	143,402	3.5	145,423	3.4	2,021	1
12 과학기술	0	0	0	0	0	0
13 예비비	0	0	0	0	0	0
14 국가	886,071	21.5	927,575	21.8	41,504	4
15 외국	66	0	0	0	△ 66	△100
16 기타	22,646	0.5	11,444	0.3	△11202	△ 49

### 3. 세목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분 야	2012년		2013년		비교증감	
	결산액	구성비	추계액	구성비	증감액	증감율
합 계	4,127,596	100	4,257,239	100	129,643	3
보 통 세	4,127,596	100	4,257,239	100	129,643	3
취득세	0	0	0	0	0	0
등록세	0	0	0	0	0	0
면허세	0	0	0	0	0	0
주민세	28,290	0.7	41,350	1.0	13,060	46
재산세	3,333,520	80.7	3,494,770	82.1	161,250	4
자동차세	643,116	15.6	641,340	15.0	△ 1,776	0
도축세	0	0	0	0	0	0
레저세	0	0	0	0	0	0
담배소비세	0	0	0	0	0	0
종합토지세	0	0	0	0	0	0
주행세	0	0	0	0	0	0
지방소비세	0	0	0	0	0	0
등록면허세	0	0	0	0	0	0
지방소득세	122,670	3.0	79,779	1.9	△ 42,891	△ 34
목 적 세	0	0	0	0	0	0
도시계획세	0	0	0	0	0	0
공동시설세	0	0	0	0	0	0
사업소세	0	0	0	0	0	0
지역개발세	0	0	0	0	0	0
지역자원시설세	0	0	0	0	0	0
지방교육세	0	0	0	0	0	0

#### 4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 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			<b>총 계</b>	<b>합 계</b>	<b>4,127,596</b>	<b>4,257,239</b>
			<b>일반공공행정(010)</b>	<b>합 계</b>	<b>1,410,340</b>	<b>1,506,455</b>
10	16	1	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,등록면허,주민세,재산,자동차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 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88 1호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,경호,경비,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 오물수거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, (지방세법 §126 1·2호)	소 계	1,273,586	1,397,319
				주민세	0	2,200
				재산세	1,271,667	1,392,949
				자동차세	1,919	2,170
10	16	3	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소 계	4,243	4,257
				재산세	4,243	4,257
10	16	7	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①, §90②)	소 계	20,876	22,705
				재산세	20,876	22,705
10	16	8	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-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3호)-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1호, §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①)	소 계	111,594	82,125
				재산세	111,594	82,125
10	16	9	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-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전동차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조례)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조례)	소 계	41	49
				재산세	41	49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			<b>공공질서 및 안전(020)</b>	<b>합 계</b>	<b>31,445</b>	<b>31,811</b>
20	25	12	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- 천재,지변,소실,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,선박,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레저,주민,재산,자동차,지방소득,담배소비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④, §92① 1호, §92②, §92③)	소 계	31,445	31,811
				자동차세	31,445	31,811
			<b>교육(050)</b>	<b>합 계</b>	<b>430,292</b>	<b>414,950</b>
50	54	14	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88 1호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	소 계	1,498	1,339
				재산세	1,498	1,339
50	54	18	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-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①, §41②, §41③, §41⑤)산업체부설 중,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,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,실습용 차량,기계장비,항공기,임목,선박에 대하여 취득,주민세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①, §42②, §42⑤)	소 계	424,182	408,952
				주민세	915	2,365
				재산세	423,267	406,587
50	53	20	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-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주민세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3①, §43②, §43③, §44)	소 계	1,839	1,786
				재산세	1,839	1,786
50	54	22	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-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-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8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②)	소 계	2,773	2,873
				재산세	2,773	2,873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			<b>문화및관광(060)</b>	<b>합 계</b>	<b>189,026</b>	<b>206,355</b>
60	61	23	종교,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-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①, §50②, §50③, §50⑤, §50⑥)-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50% 감면, 재산세 면제(조례)	소 계	163,475	180,277
				주민세	250	9,250
				재산세	163,225	171,027
60	63	28	체육진흥을 위한 감면- 정부 인,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,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①)- 한국마사회 부산,경남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(부산,경남 도내 장외발매소 발생분 제외) 세액의 20% 경감(개별감면조례, 부산광역시,경상남도, 060-063)-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% 경감(개별감면조례, 부산광역시, 060-063)-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륜장 본장(광명동 경륜장) 및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액의 50% 경감(개별감면조례, 경기도, 060-063)	소 계	18,386	18,584
				재산세	18,386	18,584
60	64	29	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- 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-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② 1?2호)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국보 등과 시 도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, 시장 군수가 지정한 부동산,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세 면제(조례)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% 감면(조례)-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종로구, 060-064)	소 계	7,165	7,494
				재산세	7,165	7,494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 (단위:천 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			<b>사회복지(080)</b>	<b>합 계</b>	<b>557,908</b>	<b>564,529</b>
80	81	34	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(균등분) 비과세(지방세법 §77②)	소 계	14,843	14,541
				주민세	14,843	14,541
80	82	35	장애인에 대한 감면-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 1~3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, 자동차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7 ①)- 시각장애(4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, 자동차세 면제(조례)	소 계	351,117	351,181
				자동차세	351,117	351,181
80	83	38	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-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, 재산세 면제,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4①)-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,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4②)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,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4③)	소 계	1,948	2,104
				재산세	1,948	2,104
80	89	39	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, 양로원, 보육원, 모자원,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, 등록면허, 주민, 재산, 지방소득,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2①, § 22②, § 22③, § 22⑤)	소 계	19,469	20,091
				주민세	1,200	1,600
				재산세	18,269	18,491
80	84	41	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-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주민, 재산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9)-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 22의2①, § 22의2②)	소 계	10,057	10,865
				재산세	10,057	10,865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80	85	42	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- 경로당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-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,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,2호)	소 계	8,508	8,878
				재산세	8,508	8,878
80	87	48	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, 부동산 취득, 등록면허, 주민세, 재산, 지방소득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,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① 1호)-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,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,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?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(지방세법 §54① 7호)	소 계	102,506	104,935
				자동차세	102,506	104,935
80	87	49	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0 ①)- 보훈병원에 대한 주민,지방소득,지역자원시설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30②)- 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주민, 재산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0③)-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 2호)	소 계	641	636
				재산세	641	636
80	88	51	임대주택에 대한 감면- 대한주택공사의 60㎡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- 대한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,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②)-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4⑤)-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2①, §31의2②)	소 계	48,800	51,257
				재산세	48,800	51,257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80	88	52	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- 대상주택의 주택담보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①)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② 1호)	소 계	19	41
				재산세	19	41
			<b>보건(090)</b>	<b>합 계</b>	<b>36,126</b>	<b>64,113</b>
90	91	55	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-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, 재산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①)-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, 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②)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	소 계	36,126	59,478
				재산세	36,126	59,478
90	92	56	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-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9① 1,2호)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,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9② 1,2호)	소 계	0	4,635
				재산세	0	4,635
			<b>농림해양수산(100)</b>	<b>합 계</b>	<b>161,039</b>	<b>138,762</b>
100	101	60	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-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① 1호)-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① 2호)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,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, 시설물 취득,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호)-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2호)-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3호)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4호)	소 계	10,001	11,289
				재산세	10,001	11,289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100	101	61	농업법인에 대한 감면-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영농, 유통,가공용 부동산 취득,재산세 50% 감면,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1)-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(조특법 § 66③)	소 계	13,413	14,954
				재산세	13,413	14,954
100	102	63	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-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,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,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,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(지방세법 § 109③ 2호)	소 계	1,671	1,680
				재산세	1,671	1,680
100	104	68	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- 농협,수협,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4①)- 농협,수협,산림조합,업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 시설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,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4②)- 농협,수협,산림조합,업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,지방소득세 50% 감면, 업무용 부동산 취득,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4③, ④)- 농협,수협,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,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7① 1호)	소 계	129,101	102,929
				주민세	7,769	9,311
				재산세	70,586	75,164
				지방소득세	50,746	18,454
100	104	71	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,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㎡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16)	소 계	6,853	7,910
				재산세	6,853	7,910
			<b>산업·중소기업(110)</b>	<b>합 계</b>	<b>164,825</b>	<b>162,438</b>
110	111	73	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특법 § 119②, § 120③, § 121)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,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,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,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0③ 1,2호)	소 계	1,839	3,492
				재산세	1,839	3,492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110	112	76	산업기술지원을위한과세특례-정부로부터인허가를받거나민법외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-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,주민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③,④)	소 계	50	150
				주민세	50	150
110	114	79	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- 벤처기업집적시설,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,재산세 대도시 종과 배제(지방세법 §58②,③)-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,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등(조례)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,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(조례)	소 계	77	0
				재산세	77	0
110	113	80	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- 고도기술수반 사업을 영위하거나,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121의2)(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)	소 계	23,516	23,324
				재산세	23,516	23,324
110	115	84	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- 도시가스 사업용 가스관,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?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1)- (인천,경기,충남,전북,전남,제주)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- (강원,충북,경북)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,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	소 계	5,730	6,623
				재산세	5,730	6,623
110	116	86	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- 자동차,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,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,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①)-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-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,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②)	소 계	133,613	128,849
				자동차세	133,613	128,849
			<b>수송 및 교통(120)</b>	<b>합 계</b>	<b>94,410</b>	<b>83,384</b>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120	122	90	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-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,주인,재산,지방소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①)-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,주인,재산,지방소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②)	소 계	91,441	80,343
				주민세	2,979	1,487
				재산세	16,538	17,531
				지방소득세	71,924	61,325
120	126	97	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-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세를 적용, 기타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③)- (서울,부산,대구)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5% 감면	소 계	2,969	3,041
				자동차세	2,969	3,041
			<b>국토 및 지역개발(140)</b>	<b>합 계</b>	<b>143,402</b>	<b>145,423</b>
140	142	106	산업단지에 대한 감면-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,증축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-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,조성 후 분양,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,재산세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①②③④)- 산업단지 내 건축,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(조례)- 농공단지 내 휴,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조례)- (부산,해운대)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- (광주 광산구)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- (대전 유성,대덕구)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- (강원,동해시)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,증축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	소 계	88,649	98,439
				재산세	88,649	98,439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 (단위:천 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140	142	108	기업도시에 대한 감면-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,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 121의17, 조례)	소 계	0	20
				재산세	0	20
140	142	109	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-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75)-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% 감면(조특법 § 121의9③)-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민,지방소득세 면제, 사업용 부동산 취득,등록면허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조특법 § 121의16)- (서울)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,등록면허세 면제- (부산) 한국거래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,등록면허세 면제- (부산)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,등록면허세 50% 감면- (제주)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4% 적용, 재산세는 일반 주택 세율 4% 적용- (제주)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% 적용, 재산세 3년간 25% 감면- (제주) 골프장용 토지,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% 적용, 골프장용 건축물,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저율과세- (제주)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,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,등록면허세 50% 감면- (제주) 건축공사 착공 후 부도,자금사정 등에 따라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를 매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,등록면허세 면제	소 계	24,780	16,603
				재산세	24,780	16,603
140	142	111	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-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4①)-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4②)-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4③)	소 계	29,973	30,361
				재산세	29,973	30,361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			<b>국가(700)</b>	<b>합 계</b>	<b>886,071</b>	<b>927,575</b>
700	701	117	국가에 대한 비과세- 국가에 대한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방소득세,지역자원시설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88① 1호, §109①, §145① 1호)- 국가가 국방,경호,경비,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오물수거와 도로공사, 우편,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)	소 계	886,069	927,560
				주민세	0	200
				재산세	874,765	915,382
				자동차세	11,304	11,978
700	701	119	국가가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,지역자원시설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소 계	2	15
				재산세	2	15
			<b>외국(800)</b>	<b>합 계</b>	<b>66</b>	<b>0</b>
800	801	123	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-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,등록면허,주민,재산,지역자원시설,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2호, §88 2호, §109①, §145②)- 주한외교기관,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 3호)	소 계	66	0
				재산세	66	0
			<b>기타(900)</b>	<b>합 계</b>	<b>22,646</b>	<b>11,444</b>
900	902	128	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⑤, §109③ 3호, §109③ 5호, §145①)-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③ 5호, 지방세법 시행령 §108③)	소 계	10,975	671
				재산세	10,975	671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 (단위:천 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900	901	134	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-협의를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 15① 6호)- 행정구역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,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,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 15② 4호)- 철도 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3③)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6②)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 163② 6호)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 40② 3호)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 40② 4호)-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 40② 5호)-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 126 3호)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66①)	소 계	7,970	7,111
				자동차세	7,970	7,111
900	902	137	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-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, 주민, 재산, 지방소득,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 71①, ②, ③2)-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, 재산세 면제,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72③ 1호)	소 계	554	569
				재산세	554	569
900	902	138	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-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재산세 면제, 주민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7① 1호, § 87② 1호)-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7① 2호, § 87② 2호)-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,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57① 2,3호)	소 계	2,859	2,803
				주민세	284	246
				재산세	2,575	2,557

분야	부문	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천원)		
				세 목	'12년(결산)	'13년(추계)
900	902	139	새마을운동조직등에대한감면-새마을운동조직의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면제,주민세50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8 ①)-한국자유총연맹의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8②1호)-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,재산,지역자원시설세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88② 2호)- (경남)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(추가)	소 계	15	17
				재산세	15	17
900	902	142	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-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 92의2)	소 계	273	273
				재산세	0	9
				자동차세	273	264